

미혼1세 축복후보자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(만 20세 이상)

기준일 : 2025.02.13. | 협회 가정국

순	제출 서류	심사기준	비고
1	입회원서	접수일자 기준으로 입교한지 6개월 이상 경과확인	
2	축복후보자 신청서	목회자소견서와 자기소개서(2줄 이상) 상세히 작성	후보자, 목회자 자필작성 및 서명
3	축복결혼행사 참여 서약서 및 축복헌금 환불관련 서약서	본인 서명란 기입 (양식 하나로 통합) 믿음의 부모 서명 필요	
4*	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※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발급 ※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첨부	유효기간 12개월
5*	사 진 - 상반신 1매, 전신 1매	※ 넥타이, 정장, 구두 착용 정자세 기준	[규격 : 가로20cm, 세로25cm] ※파일용량 300~500dpi
6	축복헌금 납부	‘행정지원센터 하나로’ 통해서 가상계좌로 입금	
7	예배 및 십일조 생활 (※ 전산 입력일 기준이므로 월말에 예배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달 내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)	※ 예 배 : 6개월 연속 기준, 월 2회 이상 십일조 : 6개월 연속 기준, 월 1회 유지 (십일조 월1회 이상 입력사항 시스템인식불가)	교구 상신일 기준 3개월
8	후보자 이수 교육	원리수련 2회(참부모론 1회 인정) ① 1박2일(최소) / 1박2일 수련 각1회 ② 1박2일(최소) / 2박3일 수련 각1회 ③ 1박2일(최소) / 야간7일 수련 각1회 ④ 1박2일(최소) / 지도자 초청 세미나 (여성연합 주관) ⑤ 청평 40일 수련 ⑥ 3박 4일 이상 원리수련 1회	유효기간 3년 [교육인정 목록]  https://bit.ly/3hbpZG1
		참부모님 생애노정	
		축복후보자 교육	
9*	건강진단서 (B형간염검사, 에이즈검사 포함)	① 필수검사항목: 신체계측, 소변검사, 흉부X선, 혈액검사, 에이즈(HIV), 간기능(B형간염) ② B형간염검사 (항원/항체 포함) : 항체가 없는 경우 - 접종 후 확인증 첨부	유효기간 12개월 (전 연령) ※ 금주, 금연 확인
10*	소득 증빙 자료 ① 회사원 :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(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부) ②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) ③ 농·축·수·임업종사자 : 출하증명서 혹은 소득유무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(예: 통장거래내역) ④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영수증)	※ 국제축복을 희망하는 후보자는 법무부 결혼 이민(F-6)비자 발급 요건 강화로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1년 간 일정기준 이상 소득증명필요 ※ 찾기쉬운 생활법령 www.easylaw.go.kr 참고 (홈→생활법령→검색창에 ‘결혼에 따른 체류자격’ 검색) ※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: 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www.hometax.go.kr ※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, 납부 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://www.nhis.or.kr/	유효기간 12개월
11*	최종학력증명서, 재학증명서(재학생일 경우)	고졸미만의 학력소지자는 상대 확정시 협회상신 가능	
12	3일 금식 또는 9일 조식 금식	목회자 확인 후 ‘하나로’ 직접 입력	
13	전도	1인 이상 입회원서 제출기준	

* 한-한 가정의 경우 4(가족관계증명서), 5(사진), 9(건강진단서), 10(소득증빙자료), 11(최종학력증명서)번 항목의 자료는 쌍방향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며 상호합의 후 반드시 양측의 서명 날인 해야 함.